

17. 각종대회 포상규정

개정 2022. 2. 25.

제1조 (목적 및 근거) 강진군을 대표하여 전국 및 도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지도자) 및 팀 또는 임원에 대한 포상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 및 표창) 전국 및 도 대회 입상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분별로 시행하고, 별표 1의 범위 안에서 시상할 수 있다.

1. 유공자부문

가. 전국체전 유공자

나. 전국소년체전 유공자

다. 팀 육성기관장(학교장, 총장포함)

라. 전라남도체육대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 대회출전입상 선수 및 지도자

마. 전국 및 도 대회(학생체전)출전입상 선수 및 지도자

바. 경기단체

2. 특별부문

전국체전에서 입상(1위~3위)한 경기력향상 경기단체 및 최고신기록 수립과 다득점을 획득한 선수

3. 지도부문

가. 입상 경기단체 전무이사

나. 입상 팀의 감독 및 코치

다. 입상한 개인종목의 종별 감독 및 코치

4. 경기부문

경기종목별 특성과 종합득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의 기준을 정한다.

가. 고교 및 대학부의 단체종목

· 소속장에게는 상패 또는 상품

· 선수에게는 장학금 또는 상품

나. 일반부의 단체종목

- 실업팀의 소속장에게는 상패 또는 상품, 선수에게는 장학금 또는 상품
 - 일반 회원종목단체 팀의 조직책임자 해당 경기단체장에게는 상패 또는 상품, 선수에게는 상금 또는 상품
- 다. 초·중·고교·대학·일반의 개인종목 및 단체전 참가선수는 상장 및 부상(상금 또는 기념품)을 수여한다.

제3조 (국제대회기준) 국제규모대회는 다음 각 호의 대회로 하고, 별표2의 범위 안에서 시상할 수 있다.

1. 올림픽 대회
2. 아시아경기대회
3. 월드컵, 국제대회

제4조 (전국대회기준) 각종 전국규모대회는 다음 각 호의 대회로 하고, 별표3의 범위 안에서 시상할 수 있다.

1. 대통령기(배) 전국 시도대항대회
2. 국무총리기(배) 전국 시도대항대회
3. 장관 기(배) 전국 시도대항대회
4. 종목별 협회장기(배) 전국 시도대항대회
5. 전국 종별선수권대회
6. 국제대회 파견 선발대회
7. 종목별 단일종별(고교부·대학부·일반부) 선수권대회
8. 각종 연맹전
9. 기타 전국규모대회

제5조 (도대회기준) 각종 도규모대회는 다음 각 호의 대회로 하고, 별표4의 범위 안에서 시상할 수 있다.

1. 전라남도체육대회
2.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3. 종목별 전라남도지사기(배) 종별대회
4. 종목별 협회장기(배) 종별대회

5. 기타 도규모대회

제5조 (준용) 각종 포상에 있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금을 포상품으로 대체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조정) 포상금은 강진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

제7조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공포하고 시행한다.

【별표 1】

전국체전(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포상기준

(단위 : 천원)

순번	포상종류	대 상	시 상	
			상	금 액
1	특 별 상	입상경기단체	상장 시상	1위 : 1,000 2위 : 700 3위 : 500
		마 라 톤	〃	1위 : 500 2위 : 300 3위 : 200
		단축마라톤	〃	1위 : 500 2위 : 300 3위 : 200
2	기록 수립상	한국 신기록	〃	500
		한국 Tie	〃	400
		대회신기록	〃	300
3	개인기록 경기 및 투기 경기입상	금 메 달	〃	300
		은 메 달	〃	200
		동 메 달	〃	100
4	경기단체 및 개인단체 경기입상 (대진단체경기)	금 메 달	〃	정원 × 150
		은 메 달	〃	정원 × 100
		동 메 달	〃	정원 × 70

※ 포상은 본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한다.

【별표 2】

국제규모대회 입상자 포상기준

(단위 : 천원)

대 회 구 분	장학 · 장려금 산출근거		
올림픽대회	개 인	1위	5,000
		2위	3,000
		3위	2,000
	단 체	1위	10,000
		2위	5,000
		3위	3,000
아시아경기대회	개 인	1위	3,000
		2위	2,000
		3위	1,000
	단 체	1위	5,000
		2위	3,000
		3위	2,000

※ 월드컵, 기타국제대회 : 격려금으로 대체

※ 포상은 본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한다.

【별표 3】

전국규모대회 포상기준

(단위 : 천원)

대 회 구 분	장학 · 장려금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기(배) 전국 시도대항대회 ○ 국무총리기(배) 전국 시도대항대회 ○ 장관 기(배) 전국 시도대항대회 ○ 종목별 협회장기(배) 전국 시도대항대회 ○ 전국 종별선수권대회 ○ 국제대회 파견 선발대회 	개 인	1위	300
		2위	200
		3위	100
	단 체	1위	50 × 정원
		2위	30 × 정원
		3위	20 × 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별 단일 종목대회 ○ 각종 연맹전 ○ 기타 전국규모대회 	개 인	1위	50
		2위	30
		3위	20
	단 체	1위	30 × 정원
		2위	20 × 정원
		3위	10 × 정원

※ 포상은 본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한다.

【별표 4】

전라남도체육대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 포상기준

(단위 : 천원)

순번	포상종류	대 상	시 상	
			상	금 액
1	기록 수립상	한국 신기록	〃	500
		한국 Tie	〃	400
		대회신기록	〃	300
2	개인기록 경기 및 투기 경기입상	금 메 달	〃	300
		은 메 달	〃	200
		동 메 달	〃	100
3	경기단체 및 개인단체 경기입상 (대진단체경기)	금 메 달	〃	정원 × 150
		은 메 달	〃	정원 × 100
		동 메 달	〃	정원 × 70
4	지도자상	체육지도자	상장 시상	1위 : 500 2위 : 300 3위 : 200

※ 포상은 본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한다.